

'22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2. 6.

목 차

I. 평가 개요	1
II. 세부 평가 계획	2
III. 평가 결과 심의	11
참고1. '22년도 평가지표 총괄표	12
참고2.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내용	14
참고3. 현장작동성 평가 대상	22



고용노동부

I.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 유도
-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분야로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 평가 의의

- 공공기관이 사업장(본사, 사업소, 도급·발주현장 등)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한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

□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본사) 및 현장작동성평가(현장)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 평가 내용은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 수행 체계

- (주관) 고용노동부 - (수행) 안전보건공단

II. 세부 평가계획

1 21년도 평가와 달라진 점

- ❖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 ❖ 현장 안전수준 평가 강화를 위한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
- ❖ 평가 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평가 유형 세분 등

□ 평가지표 개선

- 산안전보건법령 개정사항을 세부 평가지표에 반영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안법 제73조<'22.8.18 시행>)
 -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산재 예방 지도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활동
 - 도급 시 혼재작업 위험 예방(산안법 시행령 제53조의2<'21.11.19 시행>)
 -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과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화재·폭발, 끼임, 추락,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조정하는 활동
-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평가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진행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A.1.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A.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A.4.1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B.2 위험성평가 지침·계획·활동 C.1~7 기계·기구 안전조치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및 절차에 따른 점검·개선
A.3.1 안전보건 예산 편성 A.3.2 안전보건 예산 집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A.1.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B.4 관리자·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A.2.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A.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B.7.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등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

- 보건분야 평가지표를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에 포괄적으로 통합조정

기 존		개 편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근로자 건강 유지	1. 건강진단 실시· 결과·사후관리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보호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관리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 3. 건강증진활동
	2.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수립, 측정 결과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조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시행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

- 공공기관 직영·도급 사업장 및 건설발주 현장에 대해 각 1개소씩 실시하던 현장작동성 평가를 최대 각 2개소씩* 실시(기관당 최대 4개)
 - * ▲ 본사를 제외한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이 5개 이상인 경우
 - ▲ 건설발주·도급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또한, 그간 직영·도급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이미 확인된 지표는 본사 평가 시 확인하지 않았으나, '22년부터는 본사에서도 확인
 - * 다만, 직영·도급 사업장 현장작동성 평가 2개소 기관은 기존과 같이 미확인
- 한편, 본사만 있는 공공기관도 사업장 장소적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등에는 단위 지역 현장작동성평가 실시(공항·항만·위락시설 등)

□ 평가 유형 세분

-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으로 분류한 현행 평가 유형 중 서비스 집중형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룹I·II,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
 - * 그룹I(고위험 서비스집중형 기관), 그룹II(중저위험 서비스집중형 기관), 연구기관 등(기재부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 그룹별로 평가지표 배점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체계 합리화

□ 사고사망 산입범위 명확화

- 기관별 사고사망 집계 시, 산입 여부를 두고 제기된 공공기관의 이의* 등을 고려하여, 사고사망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개선
 - * 사망사고 산입 제외요청 건수/수용 건수: '20년 17/3, '21년 21/5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 단,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 함)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사망자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 발주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공공기관의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사망자 2)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사고사망자 3) 방화, 근로자 또는 타인 간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4) 사업장 외 교통사고(단,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하며, 사업장 외 도로에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졸음·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본다.) 5)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2 평가 대상

□ 평가 대상기관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중소형	
171개소	36개소	12개소	44개소	37개소	42개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29개소)

구분		공공기관명	
공 기 업 (36개)	SOC (12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 (1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 서비스 (12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93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 형 (44개)	SOC· 안전 (13개)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 진흥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 복지 증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구분		공공기관명
중 소 형 (37개)	중형 (13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형 (24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42개소)

구분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41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 확정(기획재정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 대상 선정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시에 따른 평가계획(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요구 기관

3 지표 적용 유형

□ 평가 유형

구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그룹 I	그룹 II	연구기관 등
171개소	28개소	49개소	52개소	42개소

□ 유형 분류 기준

- 공공기관 사업 특성 및 업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산업형 및 서비스집중형(그룹I, 그룹II, 연구기관 등)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아래의 업무를 주로 수행함에 따라,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 ④ 기타 정부 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서비스집중형) 기간산업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써, 기술·행정서비스 중심의 기관 또는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기관

구분	분류 기준
그룹 I	①고위험 기관* ②근로자 1,000인 이상 ③기재부의 안전관리중점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그룹 II	그룹 I 또는 연구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연구기관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기재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측정 시료 건수 ▲특수건강 진단 수진 건수 ▲알리오 입찰공고 계약 건수 ▲알리오 입찰공고 도급·발주 공사 계약 건수 ▲전년도 재해자 수 ▲일선기관 수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 현황 등을 토대로 고위험 여부 구분

□ 유형별 기관현황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8개)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서비스 집중형 (142개)	<p>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p>
그룹 II (52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구분	공공기관명
연구 기관등 (41개)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4 평가절차 및 시기

□ 평가 절차

○ 당해 연도에 현장작동성평가 후 익년도에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세부절차

- (종합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12월) 후 평가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별 평가 시행 월 공지(설명회 이후) →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장(장소) 공지* →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 평가 시행 월은 평가 전월, 구체적인 평가장소는 평가 2일 전에 개별 통지

□ 평가 시기

○ (종합평가) '23년 1월 ~ 2월 (본사별 2일)

※ 평가시기 및 대상은 별도 계획, 관련 부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작동성 평가) '22년 8월 ~ 11월 (현장별 2일)

구분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 수			건설발주 ³⁾
	0개 ¹⁾	1개~4개	5개 이상 ²⁾	
대상	본사1	직영·도급사업장1 본사1	직영·도급사업장2	건설발주1~2
시기	'23.1월~2월	'22.8월~11월 (직영·도급) '23.1월~2월 (본사)	'22.8월~11월	'22.8월~11월

- 1)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직영사업소)이 없더라도 관리범위가 넓은 공항·항만·위락시설 보유기관은 일정 지역에 대해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 2) 현장작동성 평가를 2개소에 대해 받은 기관은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확인한 평가지표는 제외하고 본사 종합평가 진행
 - 3) 건설발주 사업장은 1개소에 대해 현장작동성 평가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2개소 실시
- ※ 「연구기관 등」 그룹은 본사에 대해서만 현장작동성평가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직영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1개소 실시

□ 평가반 구성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5명의 전문가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 안전보건공단 3명 이내*

* 기간산업형 3명/반, 서비스집중형 및 건설발주 사업장 2명/반 운영

- (종합평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5명 이내

* 평가반 구성은 관계 부처 요구, 평가환경 변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평가 결과 심의

1 결과 심의

□ 실무위원회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정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결과 이의제기 사항 등 사전 검토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노·사·정) 위원 →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 심의

2 결과 활용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반영

- 안전경영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평가기관별로 결과서* 송부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서 및 평가지표별 절대등급 등 통보

3 협조 사항

-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 준비, 경영진·근로자 등 면담 지원, 현장평가 시 현장 안내 등 지원

* 증빙자료는 기관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

-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평가 모니터링 실시

참고 1 '22년도 평가지표 총괄표

기간산업형

분 야	평가 지표	배점(점)		지표적용(개)	
		①	②	종합평가	현장작동성
	합 계	1,000	1,000	30	19
	소 계	250	250	5	0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60	6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60	6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3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	×
	소 계	250	250	8	5
㉡ 안전보건관리 (8항목)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30	30	○	×
	2. 위험성평가	40	40	○	○
	3. 안전보건교육	20	20	○	○
	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40	40	○	○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0	20	○	×
	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	×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50	○	○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30	○	○
	소 계	300	300	14	14
㉢ 안전보건활동 (14항목)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120	300	7	7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0	40	○	○
	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15	40	○	○
	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5	40	○	○
	1.7.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4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80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20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20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	○	○
	2.4.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25	-	○	○
	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20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50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5	-	○	○	
	소 계	200	200	3	0
㉣ 안전보건성과 (3항목)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60	60	○	×
	2. 안전문화 정착·확산	80	80	○	×
	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60	60	○	×

①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집중형

분 야	평가 지표	배점(점)						적용지표(개)	
		①			②			종합 평가	현장 차등성
		그룹 I	그룹 II	연구 관등	그룹 I	그룹 II	연구 관등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	15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300	300	300	300	300	300	5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80	80	80	80	8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80	80	80	80	8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40	40	40	40	4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50	50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50	50	50	50	○	×
㉡ 안전보건 관리 (6항목)	소 계	250	250	250	250	250	250	6	4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60	60	60	60	60	60	○	×
	2. 위험성평가	40	40	40	40	40	40	○	○
	3.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40	40	40	40	40	○	○
	4.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30	30	30	30	30	○	×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40	50	50	40	50	○	○
6.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40	30	30	40	30	○	○	
㉢ 안전보건 활동 (11항목)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11	11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80	80	80	200	200	200	4	4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5	20	15	40	50	40	○	○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20	20	60	50	50	○	○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20	25	60	50	60	○	○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20	20	40	50	5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20	120	120	-	-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0	10	10	-	-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0	10	10	-	-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10	10	-	-	-	○	○
	2.4.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20	20	-	-	-	○	○
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10	10	10	-	-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40	40	40	-	-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0	20	20	-	-	-	○	○	
㉣ 안전보건 성과 (3항목)	소 계	250			250			3	0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70	70	70	70	70	70	○	×
	2. 안전문화 정착·확산	100	100	100	100	100	100	○	×
	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80	80	80	80	80	80	○	×

①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참고 2 평가분야별 세부 평가내용

기간산업형

㉠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6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6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 기관]
	3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관리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 3. 건강증진활동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20	B.3. 안전보건교육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40	B.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1. 관리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2. 근로자(수급업체 포함)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20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20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1.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등 절차의 관리 2.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50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30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㉔-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15 (40)	C.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비정형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15 (40)	C.1.3.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 전로 및 근접 작업 등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25 (50)	C.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2.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25 (50)	C.1.5.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2.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15 (40)	C.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2.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15 (40)	C.1.7.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4개 항목	【©-2. 건설발주 사업장】		
	2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활동체계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활동
	20	C.2.2. 건설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5	C.2.4.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C.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5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3. 건설공사 작업지휘자 배치 및 활동 관리 4. 건설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5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리 3.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4.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괄호 안의 배점은 건설발주 사업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망 감소 성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6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80	D.2. 안전문화 정착·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60	D.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A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 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A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8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8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4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6개 항목	6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관리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관리 3. 건강증진활동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40	B.3.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수급업체 포함)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30	B.4.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절차의 관리	
	그룹 I	50	B.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그룹 II	40		
	연구 기관등	50		
	그룹 I	30	B.6.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그룹 II	40		
	연구 기관등	30		

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분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11개 항목	【㉔-1. 직영 및 도급사업장】			
	그룹 I	15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 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그룹 II	20 (50)		
	연구 기관등	15 (40)		
	그룹 I	25 (60)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그룹 II	20 (50)		
	연구 기관등	20 (50)		
	그룹 I	25 (60)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그룹 II	20 (50)		
	연구 기관등	25 (60)		
	그룹 I	15 (40)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 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그룹 II	20 (50)		
	연구 기관등	20 (50)		

※ 괄호 안 배점은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1개 항목	【©-2. 건설발주 사업장】		
	1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활동체계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활동
	10	C.2.2. 건설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C.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4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3. 건설공사 작업지휘자 배치 및 활동 관리 4. 건설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0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리 3.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4.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㉔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망 감소 성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7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100	D.2. 안전문화 정착·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80	D.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참고 3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 평가현장 선정기준

- 평가대상 전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경영평가 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주관부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공공기관) 중,
 -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현장 선정
 - ① 자체청사 및 시설(교육장, 수련원, 대국민 이용시설 등)의 보유 여부
 -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보유 여부
 - ③ 유해·위험 도급사업 보유 여부
 - ④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
 - ⑤ 유해인자 보유 여부
 - 건설 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현장 선정
 - ① 냉동·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굴착, 비계 설치·해체, 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사망사고 다발작업 보유
 - ② 타워크레인(이동식 포함), 향타·향발기,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유
 - ③ 굴삭기 및 트럭 등 중장비 작업 보유
 - ④ 기타 과거 사고사망 발생 현장 또는 시공사 등
- 평가현장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초조사표」와 산재 가입현황 등을 활용하여 선정

□ **직영 및 도급 사업장 (110개 기관)**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이 직영·도급사업소 1개소이거나 아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종합평가 시기에 본사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8개)	<p>(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21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p>
	<p>(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7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p>
서비스 집중형 (82개)	<p>(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41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p>
	<p>(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6개 기관>) 강원랜드(주),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14개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20개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구기관 등 (1개)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1개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 **건설발주 사업장 (49개 기관, 57개 현장)**

구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0개)	(건설발주현장 2개소 평가<7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13개 기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비스 집중형 (29개)	그룹 I (13개) (건설발주현장 2개소 평가<1개 기관>) 한국환경공단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12개 기관>)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그룹 II (4개)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4개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연구기관 등 (12개)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12개 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